

보도시점 2025.3.4.(화) 10:00
(2025.3.4.(화) 석간)

배포 2025. 3. 3.(월) 14:00

과기출연연 '세계적 석학 채용의 길' 열린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시행(3.4)
- 국내외적 명망 높은 석학 특별채용, 주요사업비 동일 비목 내 조정 집행 허용, 실행경상비·인건비 조정 등 인사·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3월 4일 발령·시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24.1월)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24.6.31.)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개선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운영규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 마련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모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 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금번에 신설하는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함으로써 출연연이 첨예한 인재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②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출연연이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한다.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 연구기관 등에 인력교류 사례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개선도 이루어진다. 종전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인력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③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유연성 강화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 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매우 경직적으로 관리되어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 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케 한다. 또한,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제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 편성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하여 별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연구가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는 현장의 지속적 제언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관장의 판단하에

과제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대과제간 조정시 이사회에 보고, 중과제간 조정시 과기정통부에 통보 등 조정절차 또한 간소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토록 개선하였다.

위와 같이 개선되는 점 이외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항들도 있다. 출연연이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하여 유지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책임자	팀장	온정성 (044-202-4750)
		담당자	사무관	박용호 (044-202-4769)



참고1

운영규정 제정 후 주요 변경사항

조직	◇ 자체정원 운영 자율화		
		기존	변경 후
	(절차)	과기부·연구회 및 기재부 이중 협의	과기부·연구회 협의로 간소화
	(요건)	실행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	안정적 자체재원 확보, 기관 임무 부합 시 허용 (승인 시 실행인건비 증액)
조직	◇ 제한적인 결원보충 범위 확대		
		기존	변경 후
	(정규직)	군입대, 육아휴직, 벤처·창업 휴직자만 결원보충 가능	연구소기업,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도 결원보충 가능
조직	◇ 채용방식 다각화		
		기존	변경 후
	(절차)	공모채용만 허용	특별채용 허용 (국가특임연구원)
인사	◇ 국가특임연구원 운영		
	(목적)	출연(연)이 글로벌 인재경쟁 속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영입·유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파격적인 처우가 가능한 핵심 연구자 영입 제도 - 3년 이내의 임기제(연장가능)로 채용하되, 기존 인건비가 아닌 수탁과제 등 자체수입으로 해외·민간 등에 견줄 수 있는 보상까지 가능	
	(자격)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실적 혹은 산업적 공헌실적·경력이 탁월한 자,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기관 발전에 필요한 특수분야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	
	(절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 심의·확정 (연구회 및 과기정통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 * 국가특임연구원 직무, 예상성과, 보수, 채용 필요성 등 검토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특별채용 정원 존속기한 만료 전 NST의 운영실적 점검* *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 연장 요청 시 점검 결과 활용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연장)</div>	

	◇ 우수연구원 운영 규모 실질적 확대		⇒	변경 후	
		기존			
(총규모)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 이내 (우수연구원은 평균 57세~58세 경에 선정)			실제 정년 연장 수혜자로 한정(62세 이상) (정년 도래 이전 인원 제외)	

	◇ 인건비 이중관리 방식 개선		⇒	변경 후	
		기존			
	(관리)	인건비 이중 통제 (처우개선률 관리(총인건비 인상률), 지출상한 관리(실행인건비))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 관리 (실행인건비 유연화)
(총 인건비)	공공기관 대상 인상률 일률 적용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	

예산	◇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	변경 후	
		기존			
	(인건비)	당해연도 실행인건비를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결정 후 경직 운영			과기정통부장관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 가능
	(경상비)	공공기관 대상 경상비 증감률을 실행경상비에 일률 적용 후 상한 관리			이사회에서 경상비 증감률 결정 - 전기료 등의 특이소요는 경상비 증감률과 관계없이 별도반영
	(사업비)	사업비 조정의 구체적 절차 부재			동일비목 내 대과제 및 그 하위과제간 조정 절차* 규정 * 대과제 간 : 이사회 보고 중과제 간 : 과기정통부 사전통보 과제 신설 : 과기정통부, 기재부 사전 협의

	◇ 인건비 자원 확대		⇒	변경 후	
		기존			
	(불용 인건비)	결원인건비 대비 과도하게 인건비 출연금 미배정 (인건비 수입 중 정부수탁+출연금 비중 기준)			인건비 출연금 미배정 규모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 (인건비 수입 중 출연금 비중 기준)
(기술료)	정규직 인건비 재원으로 기술료 수입 활용 불가			기술료 수입을 정규직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배경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24.1.31.)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기회 마련
- 출연연 중심의 역동적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연연 혁신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24.6월)

- ⇒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규정 공백 영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출연연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체계를 포괄하고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규정 제정

□ 운영규정 제정 주요 절차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 '24.1.31.
- 관계부처 협의 : '24.4월 ~
- 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 '24.6.26.
- 연구회 의견수렴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초안 마련 : '24.6월~8월
- 운영규정(안) 1차 현장 의견수렴(기관 경영진 중심) : '24.9월
- 국조실 사전규제 심사 完 : '24.10.6.
- 운영규정(안) 2차 현장 의견수렴(현장연구자, 노조 등) : '24.11월
- 전 기관 공개의견 수렴(이메일) : '24.12.16. ~ 12.31.
- 기관장 대상 설명(경영협의회 참석) : '24.12.24.
- 부내 자구심사 : '25.1월
- 제정(안) 행정예고 : '25.2.19. ~ 2.28.
- 제정(안) 발령 (예정) : '25.3.4.